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7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7년 12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주현관)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2016. 12. 2. 신설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르면 “도시림”등의 대상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가로수 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평창군의 녹지경관을 조성·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가로수 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정비함.
 - 조례안 제6조(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도시림등의 대상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명을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서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가로수에 국한되어 있던 조성·관리 범위를 기본법과 일원화 하고 심의사항을 정비함.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리대상 및 적용범위)
 - 조례안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 그 밖에 준용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 조례안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도시림등의 대상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로수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의 조성·관리 범위를 도시림등으로 확대·정비하였으며

- 상위법령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가로수 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정비한 것으로
-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평창군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로수를”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도시림등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삭제
- ②. “관리청”이란 조경시설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 ③.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 ④. “가로수 보호틀”(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⑤.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 ⑥.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

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⑦. 삭제

⑧. 삭제

제3조의 제목“(관리대상)”을“(관리대상 및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와 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으로”를 “대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창군 행정구역내 가로수”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림등”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군 행정구역 내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의사유”를 “등의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을 “군수는 계획”으로, “가로수위원회”를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가로수위원회)”를“(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 관련”을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으로, “가로수위원회”를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가로수”를 각각 “도시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시림등 및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도시림등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평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4. 평창군 산림관련 공무원

⑤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 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할”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누설할”을 “누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야기할”을 “야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될”을 “인정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수의생육·식재”를 “가로수의 생육·식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을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6]의”를 각각 “별표 6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배수관로및”을 “배수관로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

8호 중 “대해서도제1호”를 “대해서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포함되었 는지”를 “포함되었는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실시하여야함”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해서도제1호”를 “대해서도 제1호”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 7]”을 “별표 7”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외의자(이하 ‘원인자’”를 “외의 자(이하 “원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8]”을 “별표 8”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가산금을”을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가산금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인”를 ““신고인””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9]”를 “별표 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서식 2]”를 “별지서식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서식 3]”을 “별지서식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타당성”을 “타당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대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별표 7]”을 “별표 7”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 후단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